



「우리 SUPER주거래 통장」상품설명서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 상품 개요 및 특징

· 상 품 명 : 「우리 SUPER주거래 통장」

ㆍ상품특징 : 은행 거래에 따른 우대항목 충족 시 수수료 우대를 제공하는 통장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이며, <u>실제 계약 내용은</u> 수령하시는 통장 또는 증서에 표시됩니다.

| 구 분 | 내 용 | |
|---------|--|--|
| 가입대상 | • 실명의 개인(1인 1계좌) | |
| 상품유형 | • 저축예금 | |
| 가입금액 | • 제한없음 | |
| 거래방법 | 신규 : 영업점, 인터넷(스마트)뱅킹 해지 : 영업점, 인터넷(스마트)뱅킹 ※개설기간 1개월 미만 계좌이거나 잔액 100만원 초과 계좌 또는 연결계좌보유 계좌는 영업점 방문 해자만 가능 | |
| 적용금리 | • 연 0.1% (2024.05.24 세금납부 전 기준) | |
| 이자지급시기 | • 예금의 이자 결산은 매월 셋째주 금요일에 실시하며, 결산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직전 영업일에 계산하여 그 익일(원가일)에 원금에 더함 ※ 예금의 이자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이자에 원금을 더하지 않고, 계좌해지 또는 추가 입출금 거래 발생일에 일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 이자 산출근거 | • 매일 최종잔액에 대하여 약정한 금리를 적용하여 원가일(원가에 이자를 지급하는 날)에 이자 지급 ※ 예금일 또는 지난 원가일로부터 원가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이자 계산 기간으로 함 | |

| 구 분 | ₩ooribank.com | |
|--------|---|--|
| 적용세율 | • 정상일반세율은 이자소득의 15.4% (이자소득세(14.0%)+지방소득세(1.4%)) ※ 적용세율은 2024.05.24 현재의 세율이며,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 | • 전월 아래 우대항목 중 한가지 이상 충족 시 우리은행 수수료 ^{주1)} 면제 1. 이 통장으로 급여이체 ^{주3)} 또는 연금이체 ^{주4)} 시 2. 이 통장에서 아파트관리비 또는 공과금 자동이체 출금실적이 있는 경우 3. 이 통장에서 우리카드사 신용/체크카드 대금 출금실적이 있는 경우 ※ 수수료 면제기간은 전월 실적 보유 시 이번달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이 통장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한해 수수료 면제혜택을 제공 | |
| | • 추가적으로 전월에 위의 1,2,3 조건 중 <u>두가지 이상</u> 충족하는 경우 다른은행 수수료 ^{주2)} 면제혜택 월5회 제공 ※ 수수료 우대혜택은 전월 실적 보유 시 이번달 16일에 생성되며, 이 통장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한해 수수료 면제혜택을 제공 | |
| | 주1) 우리은행 수수료 - 우리은행 전지금융(인터넷 스마트, 텔레뱅킹) 이용한 다른은행으로의 이체수수료 - 우리은행 자동화기기 이용한 영업시간 외 현금출금수수료 - 우리은행 자동화기기 이용한 다른은행으로의 이체수수료 -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 통장 재발행 수수료 | |
| 수수료 우대 | 주2) 다른은행 수수료 - 다른은행 ATM기 이용한 현금출금수수료 (단, 은행 외부에 설치된 타행제휴 CD기 및 한컴/효성/나이스 등 VAN사 CD기에서 출금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면제되지 않음) -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 - 납부자 자동이체수수료 | |
| | 주3) 급여이체 실적: 아래 중 하나 이상 충족한 경우 1. 고객이 지정한 이체일 기준으로 이 통장에 50만원 이상 입금한 경우 (지정한 이체일에 입금되어야 인정되며 지정한 이체일이 휴일인 경우 전/후 영업일에 입금된 경우도 포함하여 이체 여부를 확인) 2. 이 통장 적요란의 문구에 "급여", "월급", "급료", "수당"이 인쇄된 이체실적이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 3. 이 통장 적요란의 문구에 고객기본정보의 직장명과 동일하게 인쇄된 이체실적이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 ※ 단, 개인명의의 계좌에서 이체된 자금은 실적인정에서 제외 | |
| | 주4) 연금이체 실적 - 이 통장 적요란에 "연금"이라는 문구가 인쇄되고 입금인이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아닌 경우 (예시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 |

| 구 분 | | 내 용 (wood)gaatk.com/ | |
|----------------|--|--|--|
| 예금자보호 여부 | 해당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최고 5천만원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
| 세제혜택 | 가능 |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
|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 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 | |
| 거래중지 | •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입출금, 잔액조회, 이관 등의 거래 제한 (1) 예금잔액이 10,000원미만이며, 1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2) 예금잔액이 10,000원이상 50,000원미만이며, 2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3) 예금잔액이 50,000원이상 100,000원미만이며, 3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 거래를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한 후 가능 | | |
| 휴면예금 및 출연 |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후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가능합니다. | | |
| 자료열람 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 |

| 구 분 | 내 용 |
|-------------|---|
| 위법계약 해지권 |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단,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이고 계약이 종료하기 전일 것)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그 해지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거나 거절 사유와 함께 거절을 통지하여야 하고,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소비자의 계약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은행은 금융소비자에게 수수료, 위약금 등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한 경우(제17조 제3항),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제18조 제2항),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경우(제19조 제1항, 제3항),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제20조 제1항), 부당권유행위의 금지(제21조) |
| 연계·제휴서비스 | • 해당사항 없음 |

3 유의 사항

- 전월 우대항목의 충족여부에 따라 수수료 우대가 다르게 제공되며 수수료 우대혜택은 이 통장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한해 적용됩니다.
- 2017. 2. 1부터 "우리웰리치주거래통장"의 상품명이 "위비SUPER주거래통장"으로 2019.7.19부터 "우리 SUPER 주거래 통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 "우리웰리치주거래통장","위비SUPER주거래통장"을 가입한 고객님께서도 상품명이 "우리 SUPER주거래 통장"으로 변경되며, "우리 SUPER주거래 통장"의 상품 내용을 적용받게 됩니다.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동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본 서류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걸쳐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문서입니다.

이 상품은 우리은행 개인고객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우리은행 고객센터(1588-5000), 우리은행 홈페이지(www.wooribank.com)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부록〉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 용어 | 설명 |
|------|---|
| 압류 |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 가압류 |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 질권설정 |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 출연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